

# 협력업체 관리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 사업을 위하여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모든 대내/외/자사 사업을 위하여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 (용어정의)

협력업체는 당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이며, 도급/위탁/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거래처를 포함한다.

### 제4조 (협력업체 관리원칙)

- ① 협력업체는 기술역량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② 거래는 법인사업자와 진행하며, 개인사업자와는 거래를 지양한다. 단 필요 시 별도의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다
- ③ 협력업체 리스크 발견 즉시 유관부서에 내용을 공유한다.
- ④ 부도, 법정관리, 연체, 수행리스크 등 협력업체 리스크 발생 시 즉시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유관부서에 내용을 공유한다.
- ⑤ 협력업체는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를 받도록 요청 할 수 있다
- ⑥ 당사가 거래를 위하여 요청한 거래처 등록신청 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할 수 없다. (단, 해외거래처 예외 및 대표이사 전결을 득한 경우 가능)

- ⑦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가 신규협력업체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 제2장 협력업체 등록관리

### 제5조 (신규협력업체 등록 원칙)

협력업체는 당사와 거래하기 위하여 ERP시스템에 신규협력업체 등록이 되어야 한다.

협력업체 등록은 업체등록 요청, 업체정보입력, 정보변경으로 이루어 진다.

협력업체 정보변경시 변경된 업체정보를 확인하여 정보변경을 진행한다.

### 제6조 (등록 절차)

#### ① 업체등록 요청

1. 업체등록 요청자는 거래처등록을 위한 품의서의 방법으로 재무팀 담당자에게 업체등록을 요청한다.
2. 품의서는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업체등록 요청자는 협력업체의 정보가 사실임을 정확히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업체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협력업체로부터 수령, 첨부하여야 한다.
4. 필요서류라 함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윤리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요청 서류 등을 말한다. 단 소액거래처 또는 일회성 거래처의 경우 생략할수 있다.

#### ② 업체정보 입력

재무팀은 업체등록 요청을 접수 후 휴폐업 조회 등 관련 서류를 확인후 업체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 제7조 (협력업체 정보변경)

1. 협력업체 주요정보(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및 기타 중요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정보변경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 후 재무팀에 정보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정보 변경은 거래처변경 품의서를 통해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제3장 기타 협력업체 관리

### 제8조 (협력업체 거래정지/해제)

- ① 협력업체의 법정관리, 부도, 계약이행 불량, 기술역량 부족, 재무리스크 위험 확인 등의 협력업체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거래정지 처리한다.
- ② 거래가 정지된 업체에 대하여 거래를 재개해야 할 경우 업체등록평가를 재실시하고 거래를 재개한다.

### 제9조 (협력업체 분쟁처리)

- ① 협력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자문변호사에 내용을 이관하여 처리한다.
- ② 기타 협력업체에 계약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해야할 경우 공문 형태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일반적으로 발송하는 공문은 안내성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다.

### 제10조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 ① 도급, 용역, 위탁에 해당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의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 업체평가,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안전보건 업체평가는 협력업체 안전보건 자가진단을 통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에 필요서류를 요청하여 사실임을 확인 한다.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 ③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교육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협력업체에 예산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④ 지원 예산비용은 안전보건관리 목적을 위해서만 집행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안은 개별적 품의를 통해 진행한다.
- ⑤ 발주자는 도급, 용역, 위탁 협력업체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요구,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 (윤리, 공정거래 및 협력업체 보호)**

- ①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③ 청렴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협력사로부터 윤리서약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거래, 금품 향응 강요 등 부정행위 신고 경로 ([audit@nablecomm.com](mailto:audit@nablecomm.com))를 안내한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제보자 보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 ④ 협력업체는 당사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준수해야 한다.

#### **※별첨**

- 1. 윤리서약서
- 2. 비밀유지서약서
- 3.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윤리서약서

## 윤리 서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 정착이 상호 경쟁력 제고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윤리경영에 동참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3.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당사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이득 또는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무 또는 기능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보상하기 위해 뇌물, 접대 리베이트 일체의 댓가를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의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윤리에 위배되는 부당한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와 관련해 부당한 강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audit@nablecomm.com](mailto:audit@nablecomm.com))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실천에 최선을 다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주식회사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귀하

## 2. 비밀유지서약서

# 비밀유지 서약서

당사는 귀사(이하 "회사"라 함)와의 계약 등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하기 "비밀정보" 및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가 중요한 자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아래의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당사는 "회사"의 영업정보, 기술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항목의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관리하며 "회사"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품·원재료 정보, 거래처·고객 정보, 영업정보, 기술정보(설계·공정·도안·시방 등 포함), 판매정보, 구매정보, 경영노하우, 인사정보 등 및 이와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파일 등 "회사"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각종 정보

-영업계획, 투자계획, 재무계획, 마케팅계획, 기타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 운영 관련 정보

-"회사"가 비밀로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거나 "회사"가 내부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비밀로 유지하도록 한 정보

당사는 "회사"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비롯한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위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주식회사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귀하

# 안전 보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준수할 것이며,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안전보건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계약 의무 수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구매자의 안전보건 방침 및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며 자신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이행한다.
2. 당사는 구매자의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 과정에서 자신이 제시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성실하게 이행한다.
3.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이 구매자의 안전보건 방침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자의 조치 요구, 자료 제시 요구 등 구매자가 요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계약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당사는 계약의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 위탁, 용역시 재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할 것을 관리 감독 해야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5. 만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매자가 요구하는 안전보건 행위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당사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실천에 최선을 다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주식회사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귀하**